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은숙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2663 |
|----------|------|

발의연월일 : 2025. 6. 5.

발의의원 : 양은숙 의원,

김보경 의원, 이연숙 의원

1. 제안이유

디지털기기에 친숙한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법도박에 접근하고 경험하기 쉬워짐. 또한 가족 및 교유관계 단절, 범죄 등 2차 문제로 이어지는 청소년 도박중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박 중독 예방교육과 지원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사업 및 홍보·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나. 가목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다. 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2. “도박”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산업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

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박 예방 교육
2. 도박중독에 관한 문제를 겪는 청소년 발굴
3. 전문기관 상담 연계
4.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사업 추진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홍보) ① 군수는 청소년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박 예방·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도박 예방·근절 문화 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소년 보호법(법률)」(2025.4.22. 일부개정·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8.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법률)」(2023.10.24. 일부개정, 2024.4.25. 시행)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4.3.26. 일부개정, 2024.9.27.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법률)」(2023.6.20. 일부개정, 2023.12.2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다. 경륜·경정 :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라.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바.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3. “불법사행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해당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에 따른 사행행위 영업은 제외한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법률)」(2023.12.26. 타법개정, 2024.12.27. 시행)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 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 “사행기구 제조업”이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관(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개조하거나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사행기구 판매업”이란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수입(輸入)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투전기”란 동전·지폐 또는 그 대용품(代用品)을 넣으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기기를 말한다.

6.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과 그 홍보에 관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청소년이 불법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시작한 불법도박의 중독으로 학업능력 저하, 가족 및 교육관계 단절, 범죄 등 2차 문제가 연쇄적으로 나타나면서 의안 주관 부서인 교육정책과가 시범적으로 ‘청소년 온라인도박 예방 및 활동지원’ 사업을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1,000만원으로 계상한 바가 있으며, 이를 군의회에서 의결하였음. 이를 기준으로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여 향후 확대 시행하더라도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과 그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작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 성 군 의 회 의 원

성 명 (연 락 처)

양 은 숙 (☎ 2048)